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 기준 개정(안)

제정 2019.12.05.

개정 2020.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52조 학사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단,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 처리 된다.

제5조(신청자격)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칙」제37조3항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제36조2항에서 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학칙」제5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

제6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1회차(최초) 신청은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에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회차 신청부터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를 이수하는 자가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대체지정과목 포함)신청은 “F”학점 취득 교과목으로 제한한다.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한다.

③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수강정정이 불가하며 수강 포기 기간 내에 수강 포기를 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등록된 과목이 폐강이 된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

제8조(등록) 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받은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9조(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중 취득한 학점은 성적 및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고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③ 휴학 중인 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한 경우, 복학 승인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또는 졸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신청자격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2학기 이전에 제5조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4학기까지 신청자격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0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